

QA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에관하여

Q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에서는 비오수배출시설은 입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섯종균배양소를 하려는데 수도시설이 없는 창고형 버섯재배사의 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06-118호, '06. 11. 23)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오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급수시설 또는 상·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수·침출수 등이 유출되거나 용출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사용·저장하는 창고 또는 차고 등의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동 시설에서는 어떠한 물 사용도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옥내 소화전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한 시설은 급수시설 또는 상·하수도시설이 설치된 시설에 해당되므로 비오수 배출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버섯종균배양소의 비오수배출시설 해당여부는 동 시설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위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공동주택 세대환기 덕트 재질에 대한 무독성여부

Q 저희는 공동주택(APT) 세대환기 ABS덕트생산업체입니다. 저희는 덕트재질을 ABS(무독성)로 생산하는데 타사와 경쟁관계로 PVC재질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PVC덕트를 생산하려면 PVC+가소제를 배합하여야 생산이됩니다. 문제는 가소제에 중금속(납)성분이 들어 있어서입니다.

오염물질 방출건축자재(제16조 제1항)법에의한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만 충족시키고 중금속에 대한 규제는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환경 관리 질의 응답 사례 |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 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에는 중금속에 관한 직접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내공기 중 중금속의 농도는 미세먼지 농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산전력계 설치여부

Q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지시설로 원심력 집진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가동하면 집진시설도 동시에 가동이 되는데 이럴경우 적산전력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소각로의 가동여부는 자동온도기록계를 설치하여 기록되고 있는바 적산전력계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A 적산전력계는 대기배출시설 가동시 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대기배출시설(소각시설)과 방지시설이 동일한 전원설비를 사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및 중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전원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가측정대행 수수료 관련 문의

Q 자가측정대행에 관한 사항이 환경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환경법)에서 환경분야 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환경법)으로 이관된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법 16조 5호를 보면 「⑤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측정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말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환경부고시 2006-82호에 규정된 "측정대행업의 수수료"가 폐지되어서 쓸수 없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고시에 준한 금액내에서 수수료를 받을수 있다는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일

예) 환경부고시2006-82호가 폐지된거라면 측정대행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A 종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던 측정대행업 규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으로 이관되어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종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측정수수료는 측정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경부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으로 2007년 10월 24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측정의뢰자와 측정대행업자간의 측정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은 용역의 사용자와 제공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계약에 의해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토양오염 선의 무과실에 대한 책임 적용여부?

Q A는 5년전 매입한 토지를 최근에 B사로 매각하려고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토양이 오염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매입한 5년동안 토지사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A는 그전의 땅주인에게 오염정화요청을 하였습니다.

요청한 근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3의 ...선의 무과실책임을 근거로 한것 같은데...

만약 "누가 봐도 오염이 의심되는 토지"를 아무 조건없이 매입한 A에게 ..선의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나요?? 적용이 안된다면 A가 토지를 매입할때 관련된 모든 권한과 의무가 함께 승계된 것이 아닌지요?

A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모두 오염원인자에 해당되며 오염원인자는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오염부지에 대한 거래당시 토양환경평가 등의 수단을 통해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동 조항 단서 규정에의한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참고로,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배상 및 정화비용 등은 오염원인자의 책임정도에 따라 오염원인자 간 분담할 수도 있으며, 계약당시 거래가격 등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 폐수배출시설 신고업체에서 특정유해물질 기준치 미만 발생

Q 당사는 폐수 배출시설 5종신고업체로서 새로이 설치되는 생산 공정에서 1일 5L의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가 발생될 때에 이를 폐수 배출시설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고대상미만(1일 10L미만)으로서 신고없이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폐수 배출시설신고업체로서 새로이 설치되는 생산 공정에서 1일 5L의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가 발생될 때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가 발생되므로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수해당여부

Q 미술대학에서 학생들이 유화 또는 수채화 물감을 이용하여 미술실습을 한후 수채화 또는 유화물감 재료가 묻어 있는 물감파렛트를 세척시 발생되는 세척수가 폐수에 해당되는지 또는 오수에 해당되는지요?

A 질의내용의 미술실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79. 이화학시험시설"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유류 등은 공공수역에 방류하지 못하는바 자체 수질오염방지설에서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Q 당사는 폐기물처리업(일반소각)업체입니다. 폐합성수지(일반소각), 폐FRP(일반소각) 동일 처리방법이고 24톤/년 정도 배출되는 사업장입니다. 배출시설의 폐기물을 분리배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재활용 가능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동조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